

**"제주4.3사건은 감호왕 공산주의자들의 폭종이고 반란이다"**

#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 강력하게 반대한다!**

## **- 기자회견 -**

- 일시** : 2020년 8월 10일 (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단체** :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 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역사문화원, 역사두길포럼, 육사구국동지회,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태극단선양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해군OCS, 해사구국동지회 등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                            |             |                  |
|----------------------------|-------------|------------------|
| <b>제주4.3특별법폐지<br/>시민연대</b> | <b>보도자료</b> | <b>함께라 개한민추!</b> |
|----------------------------|-------------|------------------|

|      |                  |      |                              |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보도          | 회견일시 | 2020. 8. 10. (월) 13:00~14:00 |
| 배포일시 | 2020. 8. 10. (월) | 회견장소 | 국회의사당 앞                      |
| 담당자  | 전민정              | 연락처  | 02-737-0717                  |

###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개정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제주4.3폭동과 반란은 5.10총선거 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 수호라는 목표를 위해 남로당 중심의 인민유격대 400여명과 협조자 1,000여명이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주4.3 초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달삼은 보현산 제3병단장이 되어 1949년 8월 4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300여명을 이끌고 남도부(본명 하준수)와 같이 38선을 넘어 경북 양양군 일출산에 침투하였고, 6.25때 인민군 남침 초기 경북 청도군 운문산지구로 침투하여 경남 신불산 전투에서 사살되었다. 그의 묘는 북한 혁명열사묘역에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보고서에 제주4.3사건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 무고한 양민들과 어린 소녀들까지 죽인 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인가?
- 남한 5.10 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 선거를 지지한 것이 무장봉기인가?
- 제주4.3사건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 제주4.3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여 하루에 21명이 전사한 사건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 9연대와 경찰 내에서 일어난 좌파 반란사건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 이상의 사건 때문에 1948. 11. 17. 계엄령을 선포, 내란을 진압하였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 제주4.3폭동과 반란의 책임이 김달삼·이덕구 등 폭도에게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 국군, 경찰과 미군에 있다고 하였는가?

이러한 왜곡사실에 대하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끝끝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제주4.3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제주4.3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진상규명인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수적 목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 치우쳤다.

제주4.3특별법은 제1조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인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두 번째 목적인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중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보고서는 사안의 본질에 해당하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불충분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불충분한 보고서를 근거로 무리한 후속정책이 이어진 끝에 역사적 진실과 법적 정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의 목적은 특별법에 맞춰 진상규명을 하는 것임에도 역사적 평가를 후대로 미룬 탓에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희생자 명예회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명예회복의 선결문제인 역사적 평가가 늦어질수록 명예회복과 보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 제주4.3특별법과 개정안은 모두 위헌이다.

첫째, 특별법 제2조 정의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특별법 제2조는 공산폭동과 반란인 4.3사건을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이어서 위헌이다. 또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4.3사건의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왜곡하여 위헌이다. 개정안은 4.3사건의 정의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숨기고,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희생자 정의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고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이는 역사 반란으로 15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보상금 등의 환수규정(불가분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5.18보상법 등 유사한 보상법들은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4.3특별법은 환수규정이 없어

서 가짜 희생자가 양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환수규정을 신설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서 환수규정에 따라 거짓 희생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소급해서 환수해야 한다.

**셋째, 군사재판 무효화는 처분적법률이어서 위헌이다.**

개정안 제15조는 제주4.3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실시한 군사재판을 일률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근거는 재심재판에서 적법한 조사절차, 공소제기, 재판, 판결문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해당 희생자에게 죄목과 형량을 표시한 수형인 명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구한다. 그러나 재판기록은 전쟁시 분실되었고 수형자들은 범죄성립되는 범죄자들이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에 선전포고까지 당한 위급한 전쟁 상황이어서 적법절차 준수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나름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해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지 군사재판을 무효화할 사안이 아니다.

**넷째, 가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가짜 희생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16조 보상금 규정이 통과되면 가짜 희생자들에게 1조 8천억 정도의 보상금까지 지급되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보상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안이라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다섯째,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잘못된 진상조사결과를 부정하면 개정안 제3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가 역사적 해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도 모자라 진실을 표현할 자유까지 제약하는 전체주의 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는 특별법과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보고서는 위헌·위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며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군경과 우익을 살해, 방화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00헌마238). 그런데 위원회는 현재 결정에 반하여 가해자인 폭도를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보고서는 무장반란과 폭도들의 만행을 은폐하였다. 그 이유는 4.3폭동과 반란을 무장봉기로 왜곡하기 위함이었다. 보고서를 무

장봉기라고 왜곡 작성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및 경찰을 학살자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킨 재량권 남용행위들은 위헌·위법이며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

####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가짜내용

폭도들은 1948년 7월 20일경까지 경찰 53명, 우익 235명을 살해하였고,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은 15명이 사살되었다. 여기서 제주 폭동이 끝났으면 제주도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은 김달삼이 북한 건국을 위한 북한 해주대회에 참석한 후 북한에 체류하며 제주도에 돌아오지 않자,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이덕구가 제2대 폭도사령관이 되면서 조용하던 제주도에 48년 9월 15일부터 다시 우익과 경찰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10월 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48년 11월 2일 제주 주둔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 만에 중대장을 비롯한 국군 21명을 죽이자 이때부터 국군과 인민유격대원들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48년 10월 28일 제주9연대 남로당프락치 강의현 소위 외 80여명이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듯 송요찬 연대장을 죽이고 반란을 기도하려다 실패하였고, 48년 10월 31일 제주 경찰 및 공무원 75명이 남로당유격대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공산화하려다 실패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군 21명이 전사함에 따라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을 진압하였다.

그런데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이 되어 보고서에 9.15사건, 이덕구의 선전포고,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은폐하고 제주도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시켰다고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뒤집어씌웠다. 9.15사건과 이덕구의 선전포고와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싹 빼버린 이유는, 폭동을 무장봉기로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주4.3사건 보고서는 가짜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가짜보고서에 의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도 왜곡 서술되어 있다.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 5.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도 가짜이다.

허위 보고서에 의해 고건·이해찬 전 총리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신청만 하면 자연사(死)와 인민유격대 등 폭도까지 모두 희생자로 하여 3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외 수많은 폭도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국군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제주4.3폭동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인민유격대 등 폭도들이 경찰 153명, 국군 186명, 우익인사 1,673명을 무참히 죽였는데 이러한 반란세력과 교전해서 사살하는 것은 정당행위인데 사살된 공비들이 어찌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제주4.3사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는 폭도는 한 명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과 국군이 죄 없는 제주 양민을 13,900여명을 학살하였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토록 보고서와 4.3사건 희생자 심사가 가짜로 진행되었다.

희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함에도 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20%이며, 4.3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제주4.3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자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경찰과 국군 및 우익 민간인을 죽인 살인자 수천 명을 4.3사건 희생자 명단에서 빼야 마땅하다. 진짜 희생자는 약 2,000여명 정도이고 그 나머지 희생자라고 하는 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이므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 또한 공산폭도를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 6. 제주 평화공원(폭도공원) 안의 사료관 전시물도 가짜다.

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허위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원들의 훈련 장소였던 제주시 봉개동 12만평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583억원을 들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2008년 4월 3일 1,000억원을 들여 완공하여 개관을 하였는데, 사료관의 전시물들이 대부분 가짜다. 그리고 사료관에는 국군과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묘사하였고, 국군이 폭도들을 죽인 것을 부각시켜 영상화 하였으며, 군사재판에서 재판한 것도 불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전시물과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20만 명 남경학살 내용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 학살 내용 등,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 멋대로 작성 부착하여 대한민국을 규탄하는 장소로 삼고 있다.

그리고 13,000여명의 일부 묘비를 230억 원을 들여 조성하여 총 1,000억 원을 들여 평화공원(폭동반란공원)을 조성하여 참관자들에게 통곡하게 하고 있다. 평화공원(폭동반란공원)의 사료관 전시물이나 자료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다. 이 평화공원은 제주도 관광객과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국군, 경찰 및 대한민국을 증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친북·반미 좌익 양성의 학습장, 연방제 적화통일의 학습장소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12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공산화 될 것이다.

**‘제주4.3사건특별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해 보상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폭동을 봉기로 둔갑시켜 폭동을 폭동이라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과 학살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익우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위헌법률을 저지해야 한다.

2020. 8. 10.

국회앞에서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역사두길포럼,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      |                  |      |                              |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보도          | 회견일시 | 2020. 8. 10. (월) 13:00~14:00 |
| 배포일시 | 2020. 8. 10. (월) | 회견장소 | 국회의사당 앞                      |
| 담당자  | 전민정              | 연락처  | 02-737-0717                  |

**여순사건특별법은 위헌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수14연대반란 사건을 단순히 혼란과 무력충돌로 왜곡하고, 희생자 결정에 심사기준이 없이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다.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4.3폭동이 악화되자 육군본부는 여수 14연대장에게 제주도 4.3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이 남로당에 누설되어 남로당은 군사반란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였고, 14연대 부대 안의 지참수 상사 등 좌익 40명이 제주도 출발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력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좌익은 반대하는 장교 20명과 사병 43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14연대 2,300여 명을 완전히 반란연대로 만들었다. 영문도 모르고, 지휘할 장교들도 없는 군인들은 겁에 질려 반란군이 된 것이다. 여수·순천을 장악한 남로당 반란군과 여수 조선공산당 600명이 무장을 해서 국군이나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반란세력 2,300명 및 남로당 소속 600명과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반란군을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자는 600명이었다.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특별법안이다.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 특별법안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적반하장의 악법이다. 법을 발의하려면 좌익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그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은 명예회복을 해주는 법이 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건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사건이 남로당이 일으킨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다.

**둘째,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다.

**셋째,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특별법은 사건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희생자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020. 8. 10.

국회앞에서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역사두길포럼,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국민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 국 민 동 의 청 원 서

|   |   |        |  |
|---|---|--------|--|
| 등록일자  | 2020. 7. 28.                                |        |  |
| 동의기간  | 2020. 7. 29. ~ 2020. 8. 28.                 | 국민동의 수 |  |
| 청 원 자   | 성 명   | 전00    |  |
| 제 목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반대<br>에 관한 청원 |        |  |
| <b>청 원 원 문</b>  |   |        |  |
| <p><b>[청원의 취지]</b></p> <p>공산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자들도 희생자로 만들어 보상하고,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전제하지 않은 개정안의 보상과 처벌은 위헌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p> <p><b>[청원의 이유 및 내용]</b></p> <p>‘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까지도 <b>위헌여부가 많이 다투어진 법률입니다.</b> 금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그 동안에 문제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위헌성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p> <p>4.3사건은 명백한 공산폭동과 반란이었음에도 특별법과 개정안은 단순한 소요사태 또는 가벼운 무력충돌로 왜곡하였고, 마치 경찰의 탄압에 저항한 의로운 행위로까지 미화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해야 하는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자 1만 4천여 명 중에서 가짜 희생자가 수천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p> <p>이는 특별법이 4.3사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지 않고, 동시에 희생자에 관한</p> |   |        |  |

범위 역시 정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에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고, 위원회는 재량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희생자의 범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4.3사건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희생자 범위를 정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후,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한 이후에 희생자 결정과 보상문제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을 희생자에 포함시켜 1인당 1억 3천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개정안은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셋째, 부당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됩니다.

게다가 잘못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를 짓밟는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어느 모로 보아도 위헌이 명백한 법률입니다.

**위헌적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국 민 동 의 청 원 서

|  |  |        |  |
|--|--|--------|--|
| 등록일자   | 2020. 7. 31.                                     |        |  |
| 동의기간   | 2020. 7. 31.                                     | 국민동의 수 |  |
| 청 원 자  | 성 명  | 이00    |  |
| 제 목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        |  |
| <b>청 원 원 문</b>   |  |        |  |
| <p><b>[청원의 취지]</b><br/> 여수14연대반란 사건을 단순히 혼란과 무력충돌로 왜곡하고, 희생자 결정에 심사기준이 없이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여순특별법안을 반대합니다.</p> <p><b>[청원의 이유 및 내용]</b><br/> 여순사건은 바른 표현이 아니고 여수14연대반란 사건이 정확한 표현입니다.</p> <p>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4.3폭동과 반란이 악화되자 육군본부는 여수 14연대장에게 제주도 4.3폭동과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남로당에 누설되어 남로당은 군사반란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였고, 14연대 부대 안의 지창수 상사 등 좌익 40명이 제주도 출발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좌익은 반대하는 장교 20명과 사병 43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14연대 2,300여 명을 완전히 반란연대로 만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휘할 장교들도 잃은 군인들은 겁에 질려 반란군이 된 것입니다. 여수순천을 장악한 남로당 반란군과 여수 조선공산당 600명이 무장을 해서 국군이나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명, 순천에서 1,100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였습니다.</p> |  |        |  |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반란세력 2,300명 및 남로당 소속 600명과 교전 또는 색출 과정에서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자는 6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예 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특별법안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 특별법안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적반하장의 악법입니다. 법을 발의하려면 좌익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그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해주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건이 남로당이 일으킨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사건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희생자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박원순 변호사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제주4.3사건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라고 정의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 1. 어린 소녀까지 죽인 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입니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이 3.1발포사건과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라고 하면서 48년 4월 3일 새벽 2시 제주 좌파 남로당 폭도 400여명이 경찰지서 11곳을 공격하여 고일수 순경의 목을 쳐 죽이고, 김장하 순경 부부를 대창으로 찢어 죽이고, 선우중태 순경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리고, 일반인 문영백의 딸 문정자(14세) 소녀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애월면 구엄마을 문기찬(33세), 문창순(34세)도 죽였다. 경찰에 항거한 무장봉기라면 왜 이와 같이 일반인과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소녀들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는가? 이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입니까?

### 2. 남한 5.10 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 선거를 지지한 것이 무장봉기입니까?

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은 폭도들이 이상과 같이 우익과 선거관리위원들과 투표를 하려는 양민들을 죽이거나 산으로 내몰면서 5.10선거를 반대하여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되게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선거구 2개만 무효임) 48년 8월 25일 북한의 건국 선거에는 제주도민의 85%라고 김달삼이 주장한 52,000여명이 지지 투표를 하여 북한의 건국에 앞장섰습니다. 제주4.3사건이 경찰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라면 왜 5.10선거를 반대하고 북한의 선거를 지지하였습니까?

### 3. 제주4.3사건 2대 폭도시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왜 빼셨습니까?

48년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폭도들의 공격으로 경찰 56명, 우익 235명이 죽었고, 폭도들은 교전 중 15명이 죽었습니다. 이때까지 제주에 주둔 국군 9연대는 폭도들이 공격하지 않아 많은 양민이 죽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선거한 투표용지 52,000여장을 가지고 북한 건국선거에 참석한 폭도사령관 김달삼이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후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자 제주도는 평화를 되찾은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9월 15일 이덕구가 제2대 폭도사령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1948년 10월 24일 선전포고를 하여 4.3폭동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양민이 많이 죽게 된 원인인 이덕구의 선전포고 내용이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 4. 제주4.3 폭도가 국군을 공격하여 하루에 14명(21명)이 전사한 사건을 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이덕구는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다음 48년 11월 2일 제주주둔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중대장 이하 14명(21명)이 죽어 제주

4.3 폭동이 확대되어 치열한 전투 중에 제주도는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고, 낮에는 대한민국이 되어 제주도민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폭동을 진압하게 된 동기가 이 중요한 사건을 왜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 5. 9연대 안에서 경찰 안에서 일어난 좌파 반민사건을 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48년 10월 28일 제주도 주둔 9연대 강요현 소위 등 80여명의 좌파 국군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일망타진 되었고, 48년 10월 31일 75명의 좌파 경찰과 공무원이 제주도를 공산화 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왜 이 사건을 빼셨습니까?

### 6. 이상의 사건 때문에 48. 11. 17 계엄령을 선포, 내란을 진압하였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을 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이상의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 내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공산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왜 이상의 사건을 모두 빼버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 계엄령을 내려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영터리삼사로 4.3희생자 13,000여명 결정)

### 7. 제주4.3 폭동 책임이 김달삼·이덕구 등 폭도에게 있는데 왜 정부와 국군과 경찰과 미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습니까?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제주4.3사건 책임자는 김달삼과 이덕구와 제주 폭도들에게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제주 폭동의 책임이 왜 대통령 이승만, 9연대장 송요찬, 2연대장 함병선, 그리고 경찰과 국군과 미군에게 있다고 하였습니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박원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2011년 11월 10일까지 신문광고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주4.3사건 '실사무효 확인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①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2011. 10. 12 오후3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② 여러분의 광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44201-04-148211

현대사포럼 대표 이 선 고 (www.625war.kr)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근거 자료

1. 어린 소녀까지 죽인 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입니까?(제주4.3보고서 536쪽)  
\* 문명백의 딸 10세, 14세 학살당한 증거 - 「4.3은 말한다」 2권 23쪽 - 30쪽
2. 남한 5.1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선거를 지지한 것이 무장봉기입니까?
  - 1)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 반대 - 「4.3은 말한다」 2권 212쪽 - 246쪽
  - 2) 북한 건국 8.25선거 지지 - 「4.3은 말한다」 2권 240쪽 - 260쪽
3. 제주4.3사건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을 제주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왜 빼셨습니까?  
\* 「해방 전후사의 인식」 4권 296쪽(이덕구의 선전포고 내용.)

**【친애하는 장병 경찰원들이여!**

총 뿌리를 잘 살피라.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총은 우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산 총이다. 귀한 총자루 총 탄알을 허비 말라. 당신네 부모, 형제, 당신들까지 지켜준다. 그 총은 총 임자에게 돌려주자. 제주도 인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당신들의 피를 희생으로 바치지 말 것을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부터 쫓겨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일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부리를 돌려라. 당신들은 인민의 편으로 넘어가라. 내 나라, 내 집, 내 부모, 내 형제 지켜주는 빨찌산들과 함께 싸우라!

친애하는 당신들은 내내 조선인민의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라!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김봉현·김민주 저 166쪽)

4. 제주4.3폭도가 국군을 공격하여 하루에 14명(21명)이 전사한 사건을 왜 제주4.3 진상 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 한국전쟁사 67년도 1권 444쪽
5. 9연대 안에서와 경찰 안에서 일어난 좌파 반란사건을 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 1) 강의현 소위 등 80명 반란음모 - 「4.3은 말한다」 4권 118쪽 - 121쪽
  - 2) 제주 적화음모사건 - 「4.3은 말한다」 4권 133쪽 - 143쪽
6. 이상의 사건 때문에 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 내란을 진압하였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을 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빼셨습니까?

1) 계엄령선포 - 「4.3은 말한다」 4권 365쪽 - 370쪽

2) 제주4.3희생자 13,000여명 결정 - 화해와 상생

3) 13,000여명 앵타리 심사 - 2011. 1.1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2010 누2426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항고인 : 이선교 외 11명, 피항고인 : 국가기록원 서울 기록정보센터장)의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사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는 보증인도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

7. 제주4.3폭동 책임이 김달삼 이덕구 등 폭도에게 있는데 왜 정부와 국군과 경찰과 미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까?

\*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538쪽 - 539쪽

2011. 10. 12

**작성자 : 현대사포럼 대표 이 선 교**

## 광주고법 제주부, 이선교 목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 목사 강연 중 폭도공원 등은 의견표명에 불과,  
법원 4.3폭도 규정 이선교 목사 손 들어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9월 21일 오후 2시 김두연 전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등으로 구성된 98명이 서울 모 교회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김두연 회장 등 98명은 같은 해 7월과 8월 “이선교 목사의 강연과 진정서 제출로 인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해(2010년) 4월 제주지법 제2민사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심도 있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목사가 희생자들에게 각 30만원 씩, 나머지 유족에게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는 것으로써, 4.3희생자 유족 등 4.3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지난 2008년 1월 10일 ‘북한 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의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진압경찰과 국군을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의 학살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거나, 제주시 봉개동에 세우는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선교 목사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이선교 목사는 2008년 1월 한 포럼의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13,564명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희생자로 인정하여 이 가운데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표현하면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하였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연 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추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내용이나 강연에 앞서 배포된 자료 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강연에서 제주4.3공원을 폭도공원,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로 작성 되었으며, 13,564명 등이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전 반적인 취지는 '**좌파들의 활동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적 편향되게 작성되었고, 희생자 13,564명 가운데는 선량한 피해자와 함께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 사건 당시 국군과 경찰 등을 살해한 폭도들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주4.3 진 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등의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강연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모두가 제주 4.3 당시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지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폭동에 가 담한 13,564명',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 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희생자 모두가 폭도라고 지칭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 중 이 목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고 판시하므로 피고인 이선교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